

제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2. 6.

개정 2012. 3. 1.

개정 2016. 3. 1

개정 2016. 9. 19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②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③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④내규라 함은 외부에 공시함이 없이 사무처리의 부분적인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.

제2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
제4조(제정권자)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본교의 직제에 관한 기본규정
2. 교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
3.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규정

제5조(효력) ①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②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

④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입안) ①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획산학본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제규정 입안 및 심의 요청서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본정보 | 규정명 | |
| | 소관부서 | |
| | 형식 | 규정(), 규칙(), 지침(), 시행세칙() * 규정과 시행세칙이 동시에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경우 한 번에 작성 |
| | 구분 | 개정(), 제정(), 폐지() |
| 추진배경 | | |
| 주요내용 | 가. 나. 다. | |
| 붙임 | 가. 신 규정 나. 신·구 대조표 | |

제출일 : 20 . . .

부서장 : (인)

(별지 제2호 서식)

| 규 정 대 장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일련번호 | 규정번호 | 소관부서 | 규정명 | 제정일 | 개정일 | 비 고 |
| | | | | | | |